
Ⅲ. 국내 보험산업의 진입·퇴출 주요 규제

1. 진입규제 주요 내용

가. 보험업의 구분

보험업법 제2조에서는 보험업을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정의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업을 크게 생명보험업²⁰⁾,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나누고 있으며, 제3보험업의 개념은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은 각각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생명보험상품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이며, 손해보험상품은 제3보험상품이 보장하는 위험을 제외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제3보험상품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의 본체 내에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영을 원칙적으

20) 보험업법 제정 시에는 생명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71년 개정 시에 생명보험이 인보험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가 2003년 다시 생명보험으로 변경되었다.

로 금지하고 있으며 자회사형태로 상호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체 내의 겸영은 다음 3가지의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0조 보험업 겸영의 제한).

겸영이 허용되는 첫 번째 보험종목은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이다. 이는 손해보험회사일지라도 영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종목이다. 이에 해당하는 종목은 조세제한특례법(제86조의2)에서 정한 연금저축계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부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퇴직연금계약이다. 그러나 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과 보증보험을 제외한 종목(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 열거 종목 전체)을 전부영위하지 않으면 겸영이 불가능하다(시행령 제15조).

세 번째 겸영보험종목은 시행령에서 정한 제3보험에 부가되는 보험이다. 이에 해당하는 보험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하는데, 보험만기는 80세 이하,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여야 한다는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이 보험을 손해보험회사가 겸영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해야만 가능하다.

나. 보험사업 영위형태

보험업법 제4조제6항은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형태(legal form)를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보험회사는 100% 해외자본으로 구성된 현지법인 형태, 국내 회사와의 합작법인 형태, 국내지점의 형태로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보험회사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업 영위형태에 대한 규정은 1977년 보험업법 전문개정 때 명시되었다.

다. 보험업 면허종류

보험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제4조). 생명보험업 종목에는 생명보험,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연금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규정된 종목은 없음)이 해당된다. 손해보험업 종목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을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즉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 등이 해당된다. 제3보험업 종목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규정된 종목은 없음)이 포함된다.

이러한 보험종목별 허가제도는 2000년 보험업법 개정에서 도입되었는데, 이전에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보험업을 허가해 왔었다.

라. 진입허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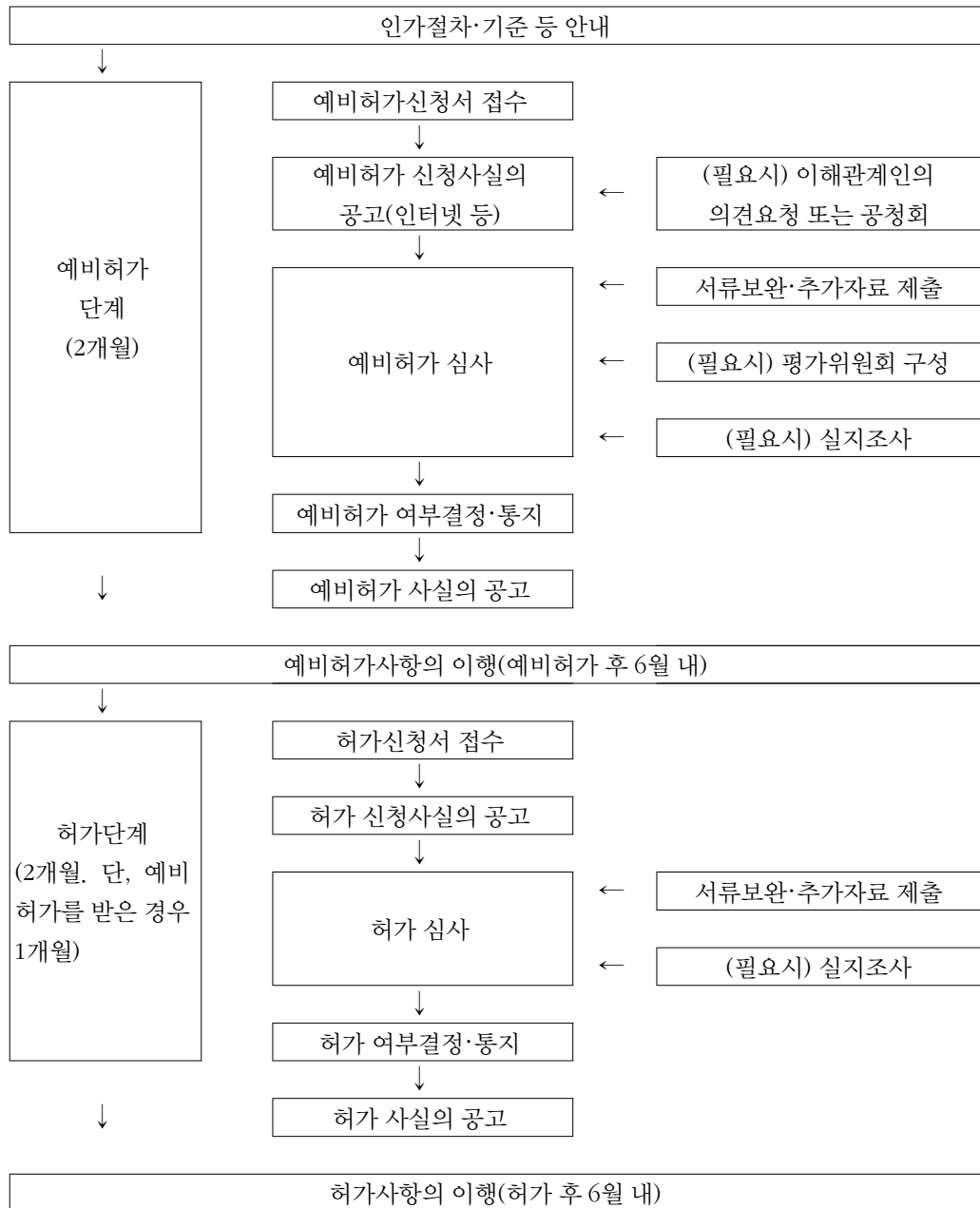
일반적인 보험업 허가절차는 <그림 III-1>과 같은데, 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6개월 이내에 동 조건을 이행한 후 본 허가를 신청한 후 1~2개월 내에 허가 심사를 하게 되고, 허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허가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보험업법 제7조). 따라서 보험회사의 최소 진입허가 소요기간은 진입할 회사가 서류 등의 하자가 없이 완전한 준비가 된 경우에 3개월이 소요된다.

보험사업 허가를 위해서는 사업허가신청서²¹⁾와 함께 정관, 업무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포함), 기초서류(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21) 허가신청서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사항, 시설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종목, 사업방법서를 적어야 한다(시행령 제9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중에서 사업방법서를 제출해야 한다(보험업법 제5조).

〈그림 Ⅲ-1〉 보험업 허가절차



자료: 보험업감독규정 별지 제2호.

마. 보험업 허가 요건

보험업법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는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 중개, 대리하지 못하도록 규정(일반금지조항)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보험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며(보험업법 제4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00년 보험업법 개정 이전에는 경제적수요심사제도(ENT: Economic Needs Test)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시장의 안정유지를 위하여 보험사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제17차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사업 허가요건 등 허가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다.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및 상호회사의 사업허가요건(제6조)은 크게 최저 자본금 또는 기금 요건,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요건, 대주주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외국보험회사의 사업허가 요건으로써는 영업기금 요건,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요건, 보험업 영위요건, 재무건전성 요건이 있다.

1) 자본금요건

보험업법 제9조는 보험업 개시요건으로 300억 원의 자본금 또는 기금 납입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보험종목만을 취급하는 회사를 위해 최저 5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을 달리 할 수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보험종목을 14개 종목으로 세분화하여 자본금요건을 규정하고 있다.²²⁾ 또한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회사는 일반적인 보험업 개시요건 자본금 또는 기금의 2/3에 상당

22) i) 생명보험 200억 원, ii)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200억 원, iii) 화재보험 100억 원, iv)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150억 원, v) 자동차보험 200억 원, vi) 보증보험 300억 원, vii) 재보험 300억 원, viii) 상해보험 100억 원, ix) 질병보험 100억 원, x) 간병보험 100억 원, xi) 기타 보험종목 50억 원.

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회사는 총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 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회사로 제한하고 있다(보험업법시행령 제13조).

〈표 Ⅲ-1〉 보험종목별 요구 자본금

보험업의 허가종목 구분(21개)		자본금/기금 요건 : 시행령(제12조)			
보험업법 제4조	시행령 제8조	보험종목(14개)	금액	비고	
생명보험	1. 생명보험	-	1. 생명보험	200억	
	2. 연금보험	-	2. 연금보험(퇴직)	200억	
	3. 기타보험	-	기타보험	50억	*
손해보험	4. 화재보험	-	3. 화재보험	100억	
	5. 해상보험	-	4. 해상보험	150억	
	6. 자동차보험	-	5. 자동차보험	200억	
	7. 보증보험	-	6. 보증보험	300억	
	8. 재보험	-	7. 재보험	300억	
	9. 기타보험	1. 책임보험	1. 책임보험	100억	
		2. 기술보험	2. 기술보험	50억	
		3. 권리보험	3. 권리보험	50억	
		4. 도난보험	4. 도난보험	50억	*
		5. 유리보험	5. 유리보험	50억	*
		6. 동물보험	6. 동물보험	50억	*
		7. 원자력보험	7. 원자력보험	50억	*
		8. 비용보험	8. 비용보험	50억	*
9. 날씨보험		9. 날씨보험	50억	*	
제3보험	10. 상해보험	-	10. 상해보험	100억	
	11. 질병보험	-	11. 질병보험	100억	
	12. 간병보험	-	12. 간병보험	100억	
	13. 기타보험	-	기타보험	50억	*

주: *: 시행령 제12조에서 기타종목 50억 원으로 규정된 종목임.

자본금 또는 기금요건은 보험업 제정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1962년 제정된 보험업법은 최저자본금 또는 기금을 손·생보 구분 없이 5억 환, 50% 이상

을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1962년 보험업법 제1차 개정 시에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1억 원,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으로 분리하였다. 이후 보험사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생명보험은 2억 원 이상, 손해보험 3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게 된다(1971년 제2차 보험업법 개정). 제5차 보험업법 개정(1988. 12. 31)은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최저납입 자본금 또는 기금을 상향조정하여 인보험은 100억 원 이상, 손해보험은 30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1996년 OECD 가입 등으로 인해 시장이 추가 개방되면서 심화된 금융산업의 경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제8차 보험업법 개정(1997년)은 최저자본금을 손·생보 구분 없이 300억 원으로 조정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상향 조정하였다. 새롭게 진입했던 생명보험회사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적 문제를 보이다가 IMF 구제금융 기간 동안 이러한 문제로 인해 퇴출하는 사태가 빚어졌는데, 생명보험회사 최저자본금 상향조정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험종목별 허가제를 도입한 2000년 개정 후에는 보험사업 중 일부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100억 원 이상 범위에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종목 이상을 취급할 경우에는 3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제19차 보험업법 개정(2003. 5. 29)은 규제완화, 계약자보호장치 강화, 감독체계의 선진화 등을 통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는데, 특히 최저자본금을 종목별로 2000년에 비해 더 세분화하였으며 통신판매전문회사의 설립자본금을 2/3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2)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

전문 인력·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으로는 우선,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무수탁자(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이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전산전문 인력, 그 밖에 영업·계약·보전·보험금지급 등 보험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무

실 등 영업시설, 전산설비(전산설비의 적정성 여부는 보험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판단) 등의 물적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한다.²³⁾

한편 2008년 금융위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는 보험회사의 일부업무(보험금지급업무, 손해사정업무)를 외부위탁 시 손해사정사의 보유의무에 대한 완화를 검토하였으며 2010년 개정에 반영되었다. 즉 손해사정업무, 보험계약 심사 관련 조사업무,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보험사고 조사업무, 전산설비의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중 하나를 외부위탁²⁴⁾하는 경우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보험업법 제6조제2항).

3) 사업계획의 타당성

보험업법감독규정(제2-6조제2항 및 별표3)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관련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업계획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될 것, 둘째,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셋째, 위의 지급여력비율 유지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은 차입(후순위채무 포함)으로 조달하여서는 안 되며, 조달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마지막으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사업계획서의 합리성과 실현가능성, 내부통제기준이 어떤 경우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이 필요하다.

23) 자세한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2.인력·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였다.

24) 제10조(허가의 세부 요건 등) ②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손해사정업무
2.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
3.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
4. 전산설비의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4) 대주주 요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여 대주주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충분한 출자능력을 보유하고 건전한 재무상태를 확보하고 있으며, 경제질서를 해친 일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은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300% 이상,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²⁵⁾ 다음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며, 자금조달이 부채성 조달자금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최근 5년간 보험관계법 및 금융관계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어야 하며,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 인가,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인 경우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자이어야 한다. 또한 동 규정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는 기관 이외의 내국법인, 내국인으로써 개인, 외국법인,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도 요건을 정하고 있다.

바. 외국회사의 영업허가 요건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하며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업 허가를 받기위해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만족해야 하는 전문 인력 및 물적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요건 등은 국내회사가 만족하여야 하는 해당 조건들과 동일하다(보험업법 제6조제2항).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자본금 및 기금 요건으로 보며, 보험업법시행령에서는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²⁶⁾ 30억 원 이상 보유를 정하고 있다(보험업법시행령 제14조). 또한 외국보험

25) 은행의 경우 분기 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분기 말 현재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200% 이상, 보험회사의 경우 분기 말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별표 4).

회사의 국내지점은 이외의 다른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우선 외국 법령에 따라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험업과 같은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산상황, 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의 국제적 인정 요건과 국내 경영에 충분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2-6조).

아울러 보험업법 제75조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매사업연도 결산 결과 보유자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60일 내에 부족한 자산을 보전해야 하며, 결산 이전이라도 금융감독원장이 보전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지시 후 30일 이내에 부족한 자산을 보전해야 한다(보험업법감독규정 제3-5조). 본 규정은 본점의 자산과 국내지점의 자산을 구분하여 국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퇴출규제 주요 내용

가. 퇴출의 구분 및 절차

보험회사의 퇴출사유는 크게 자발적 사유와 비자발적 사유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자발적 퇴출사유는 존립기간의 만료(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 주주총회 등의 결의²⁶⁾, 회사의 합병²⁸⁾, 보험계약 전부이전 등이 해당된다. 비자발적 해산 사유로는 보험회사의 파산, 보험업 허가취소, 해산을 명하는 재판 등이 있다.

보험회사의 퇴출은 자발적 퇴출과 비자발적 퇴출로 구분하여 관련된 법규가 적용된다. 자발적인 퇴출은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비자발적인 퇴출은 금융산업구조개선예안법(이하 '금산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

26) 1962년에 제정된 외국보험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2억 원 이상의 공탁을 하도록 하였으나, 1977년 보험업법에 외국보험회사의 사업에 관한 규정이 흡수되면서 영업기금제가 도입되었다.

27) 알리안츠손해보험의 예가 이에 해당된다.

28) 보증보험사, 생명보험사 퇴출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발적인 퇴출과 비자발적인 퇴출로 구분하여 관련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Ⅲ-2〉 보험회사 퇴출의 구분

구분	자발적 퇴출	비자발적 퇴출
퇴출사유	주총결의, 임의합병, 계약이전, 영업양도	파산, 허가취소, 법원판결, 계약이전, 강제합병
법규적용	보험업법(제8장 해산 및 청산) 상법	금산법
계약자보호	보험업법(3월 이내 보험금지급)	예금자보호법, 보험업법(제3자보호)

보험회사의 비자발적인 퇴출의 경우 다른 기업에 비해 다른 규제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퇴출을 규율하는 법체계에서 보면 비영리법인은 민법이 적용되고, 상사법인은 상법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해산과 청산규정을 적용받고 보험업법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해산²⁹⁾과 청산³⁰⁾절차에 대해 제8장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나. 퇴출절차

보험회사의 해산 및 청산절차에 대해 보험업법은 총 14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정리계획서의 제출(제155조)
- ② 보험계약의 이전 및 해산에 대한 주총 특별결의(제138조)

29) 해산은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할 경우, 합병, 파산, 분할, 분할합병일 경우, 법원의 해산명령이 내려졌을 경우에 회사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요건에 해당하며,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이것에 의하여 곧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성남·김건(2003), p.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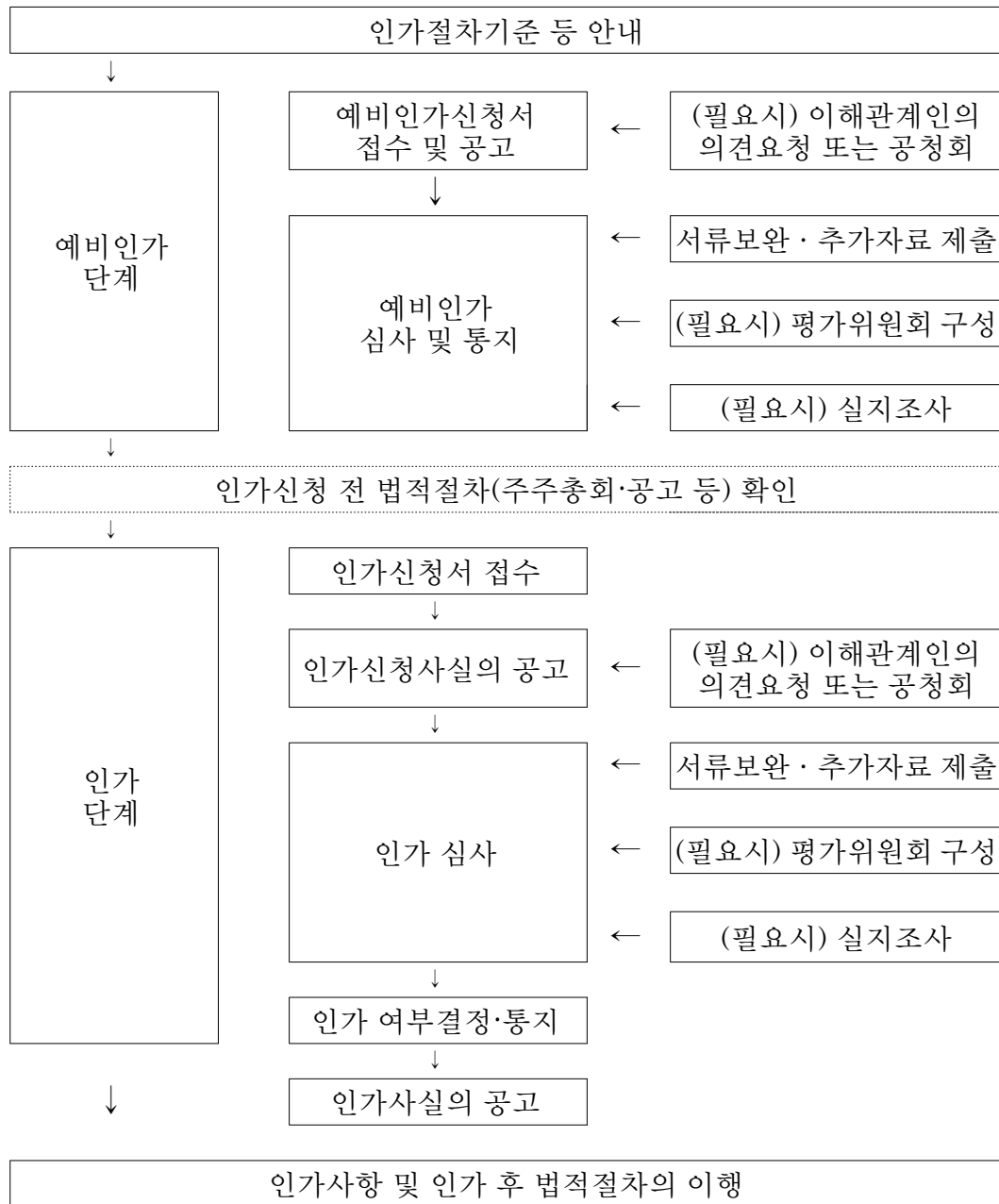
30) 청산은 회사의 해산 이후에 그 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한 후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 청산은 법정청산과 임의청산이 있으며, 주식회사는 법정청산만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가 합병, 분할(또는 분할합병) 또는 파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성남·김건(2003), p. 342.

- ③ 이전받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이전에 관한 계약 체결(제140조)
- ④ 계약이전 공고 및 이의제출 접수(제141조)
- ⑤ 보험계약이전 및 해산 인가신청(제139조)
- ⑥ 보험계약이전 및 해산 인가(제139조)
- ⑦ 보험계약이전에 대한 공고(제145조)
- ⑧ 주주에 대한 해산통지(상법 제521조)
- ⑨ 해산등기(상법 제521의2 및 제228조)
- ⑩ 청산인 선임등기(상법 제531조)
- ⑪ 법원에 청산인 신고(상법 제532조)
- ⑫ 채권자에 대한 최고(상법 제535조)
- ⑬ 청산보고서 주총승인(상법 제540조)
- ⑭ 청산종결 등기(상법 제542조 및 제264조)³¹⁾

보험회사가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 폐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폐업 60일 전에 정리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앞에서 언급한 절차에 따라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회사가 해산결의 및 합병, 계약이전을 하고자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다(보험업법 제139조). 해산의 결의를 인가받기 위해서 인가신청 전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인가와 본인가의 인가절차는 <그림 III-2>와 같다(보험업감독규정 제7-32조).

31) 이성남·김건(2003), p. 344.

〈그림 Ⅲ-2〉 해산, 합병 등의 인가절차



자료: 보험업법 감독규정 별지 제13호.

다. 퇴출방법

1) 보험회사의 합병

보험회사의 합병³²⁾은 2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및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회사의 전 재산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법률요건이다. 보험회사의 합병은 당사자인 보험회사들이 경영전략적인 측면에서 하는 임의합병과 개별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진행되는 강제합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국내 보험회사들의 합병을 보면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른 합병이고 임의합병은 한화손보와 제일화재의 사례만 있다.

보험회사의 합병은 ① 합병계약의 체결(시행령 제75조), ② 합병결의(법 제138조), ③ 합병결의 공고(법 제151조), ④ 보험계약자 및 채권자의 보호절차(법제 151조), ⑤ 합병내용 공시, ⑥ 합병의 인가(법 제139조), ⑦ 합병기일 및 보고절차, ⑧ 합병의 공고, ⑨ 합병의 등기절차를 거친다. 국내보험회사가 합병계약의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업법에서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준용(법 제141조, 145조, 149조)하고 보험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험계약조건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계산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한 경우에는 신계약을 금지하며(법 제142조), 자산처분도 금지(법 제144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법 제151조제1항). 합병계약에는 보험계약이전이 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가 10% 이상(보험금액 10%) 있는 경우에는 이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32) 영업양도는 특정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영업재산이 다른 보험회사로 일괄하여 이전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합병은 포괄승계이므로 개별적인 권리의무의 이전절차가 불요하지만 영업양도의 경우 특정승계이므로 개별적인 권리의무의 이전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보험업법상에서 영업양도에 대해서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법 제150조). 이성남·김건(2003), p. 354.

보험회사의 합병은 합병계약에 대한 이의제기 공고 후 1개월 이내에 인가신청을 하여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인가절차는 해산 참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이전결의에 대한 이의제출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합병계약서, 존속회사의 정관, 각 회사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보험계약보유현황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75조). 인가신청이 되면 금융위는 해산·인가시와 동일한 내용을 고려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Ⅲ-3〉 보험회사의 해산과 합병 절차

구분	해산	합병
구분, 법규	자발적해산: 정리계획서 제출 비자발적 해산: 금산법	임의합병: 보험업법 강제합병: 금산법
결의	보험업법 제39조(상호회사창립총회), 상법 제434조	
금융위 인가	금융위 인가필요(주총의사록, 청산사무추진계획서, 계약자 등 보호절차 증명서류, 상법 등 법령이행 준수증명서)	계약이전 이의제기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 인가신청(합병계약서, 존속회사의 정관, 각 회사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보험계약보유 현황자료 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자 보호	주총결의, 허가취소, 해산명령으로 인한 해산 시 해산일 3개월 이내 보험사고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법 제158조)	인수회사가 모든 책임 부담
종료절차	해산인가 및 등기, 청산종결 등기	합병인가 및 등기(청산절차 불요)

2) 보험계약 이전

보험계약의 이전은 자발적으로 보험회사가 해산하거나 비자발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책임준비금이 동일한 보험계약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140조). 또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해산 및 합병에서 설명). 아울러 보험계약의 이전에 있어서도 강제이전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금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보험업법에서 임의의 계약이전에 관한 절차를 정리하여 보면, ① 정리계획서 제

출(제155조), ② 주총 결의(제138조), ③ 이전계약 체결(제140조) 및 신계약(자산처분) 금지(제142조, 제144조), ④ 계약이전 공고 및 이의제출(제141조), ⑤ 계약이전의 인가(제139조), ⑥ 계약이전인가의 통지, ⑦ 계약이전 공고(제145조) 순으로 되어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해산 및 합병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39조). 이때 첨부되는 서류로는 이전계약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보유계약현황,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이전재산총액과 재산종류별 수량 등 명세, 각사의 보유계약 현황, 계약자보호와 관련된 서류이다. 계약이전에 대한 인가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국내의 계약이전 과정에서 보험계약조건을 변경한 사례는 없다.

〈표 Ⅲ-4〉 보험계약 이전 절차

구분	보험계약 이전 사유	
	해산시	합병시
공고	계약이전 결의 공고(결의 후 2주 이내)	
계약조건 변경	보험계약 전부이전의 경우에 한정(계산기초, 보험금액삭감 및 보험료 감액, 계약조항 변경)(법 제143조)	계산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법 제152조)
이의제기	계약이전 이의제기(기간 1개월 이상, 계약자 또는 금액 10% 이상시 불가)	
인가신청	이의제기 기간종료 후 1개월 이내 계약이전 인가신청(이전계약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보유계약현황,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이전재산총액과 재산종류별 수량 등 명세, 각사의 보유계약 현황, 계약자보호관련서류)	
이전인가 통지	이전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계약이전 인가 통지(법 시행령 제38조)	
이전공고	이전한 경우 7일 이내 계약이전 공고(법 제145조)	

라. 강제퇴출

1) 사유 및 절차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산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동 법에 의해 보험회사를 비롯한 많은 부실금융기관³³⁾이 구조조정을 거쳤다. 보험산업의 경우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퇴출은 보험업법에서 부실보험회사를 판정하고 부실회사가 생긴 경우 금산법에 의한 합병이나 강제이전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금산법에서의 구조조정방법은 합병과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금산법 제3조). 또한 부실금융기관을 합병 또는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시에는 “1. 합병 또는 전환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2.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기존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합병 또는 전환 후에 하려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고 영업계획이 적정할 것, 5. 합병 또는 전환 후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6.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을 것, 7. 자기자본비율, 부채 등이 적절한 수

33) 금산법 제2조(정의)의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의 정의에 의하면 다음 세 가지이다.

-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써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예금 등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황이 정지된 금융기관.
-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준일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부실금융기관의 구조 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합병과 전환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금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금융기관이나 임원에게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개별 금융업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가 개별법규에서 정해져 있다. 보험회사의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on action)를 발동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판정은 보험업법 제123조의 재무건전성 유지와 시행령 제65조의 재무건전성 기준이다. 이에 근거하여 보험업감독규정(제7-17조~제7-23조)은 보험산업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재무건전성을 지급 여력과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3단계의 조치, 즉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 전부정지 또는 보험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표 Ⅲ-5〉 보험회사 적기시정조치 단계 및 내용

구분	적용기준	조치사항	이행기간
경영개선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여력비율 50~100% 미만 경영실태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급여력 또는 자산 건전성 4등급(취약)인 경우 	자본금조정, 사업비감축, 요율조정 등 자구노력조치	1년
경영개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여력비율 0~50% 미만 경영실태평가등급 4등급(취약) 이하인 경우 	점포폐쇄제한, 보험업일부정지, M&A 및 계약이전 계획 수립	1년 6개월
경영개선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금융기관 지정된 경우 지급여력비율 0% 미만 	주식소각, 6월 이내 보험업 전부정지, 계약이전, 양도, M&A	금융위가 정함

주: 거액금융사고, 부실채권발생으로 단계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함.

2) 보험계약자보호제도

보험회사의 퇴출은 자발적 퇴출과 비자발적 퇴출로 구분되는데, 이에 따른 계약자보호수단은 다르다. 특히 자발적인 퇴출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M&A 또는 계약이전³⁴⁾ 등을 통해 퇴출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39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자를 보호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국내 보험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자발적 퇴출 사례로는 알리안츠손해보험회사가 LIG손해보험회사에 보유계약을 전부이전하고 해산한 바 있으며, 제일화재가 한화손해보험사에 인수되어 제일화재의 보험계약이 전부 이전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비자발적인 퇴출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제도 및 손해보험의 제3자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이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의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³⁵⁾을 곱한 금액을 연간보험료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파산 등으로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계약자에게 5천만 원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제32조). 예금보험제도에서 보호되는 보험계약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이며,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 주계약은 보호되지 않는다.

34) 보험업법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

35) 예금보험법 시행령 제14조(출연금) ① 부보금융기관은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기관별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은행: 100분의 1
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100분의 1
3. 보험회사: 100분의 1
4. 종합금융회사: 100분의 5
5. 법 제2조제1호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함): 100분의 5